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2년 3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부서간 일부 업무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11.08.24. 시행) 및 행안부 예규 제380호에 따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괄 : 1실, 12과, 2직속, 1사업소, 10읍면, 112담당
→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13담당

나. 기구신설 : 1사업소 3담당

○ 사업소명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신설 및 조정

□□ 신 설(+1) : 상하수도사업소「관리담당」

□□ 부서이동(3)

- 민원봉사과「건축관리담당」→ 도시행정과「건축관리담당」
- 도시행정과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하수도담당」

□□ 명칭변경(1) : 환경보호과 수질관리담당
→ 환경보호과「수계관리담당」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개정조례안 : 별첨

(3) 입법예고(2012. 2. 29 ~ 3. 20) : 의견 있음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여 부	비 고
산림과장	**□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업무 이관요** ○ 대상업무 :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업무 전반 ○ 이관부서 : 산림과(산지개발) → 환경보호과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제2668호, 2010.8.9)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녹색환경과로 업무 이관요.	**반영() 미반영(√)** ○ 도에서는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업무 전반에 대해 기존 산림녹지과에서 녹색환경과로 이관하였으나, ○ 우리 군에서는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배치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향후, 조직개편 시에 업무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 행정과장	**□ 개발행위(토지분할)업무 이관 부당** ○ 민원봉사과에 분장되어 있는 개발행위(토지분할)업무를 도시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 찾아가는 민원행정에 불부합하고, 민원인이 민원봉사과 1회 방문으로 해결될 사항을 여러 부서를 방문, 민원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많음.	**반영(√) 미반영()** ○ 지적부서에서 개발행위(토지분할)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비록 업무의 공정성을 다소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으나, ○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대체방안으로 개발행위(토지분할 업무 처리 시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발행위부서 등 관련 부서에 협의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4조(분장사무) 제1항 기획감사실의 분장 사무에 “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4. 계약원가심사

제4조(분장사무) 제5항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 중 “31”호 내지 “37”호를 삭제하고, “38”호를 “31”호로 한다.

제4조(분장사무) 제11항 도시행정과의 분장사무 중 “20”호 내지 “29”호를 삭제하고, “20”호 내지 “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0.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21. 주거환경 개선사업
22.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23.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24. 무허가 건축물 단속
25.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26. 건축물대장 관리

제11조 제2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45
상하수도사업소	성주군 성주읍 성산 8길 40-42

제13조(소관사무) 제“3”호 및 “각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3.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행정 종합기획 및 법제관리
나. 상하수도 재산 및 자재관리
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라. 물절약홍보 및 통계관리 업무
마.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업무
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업무
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지도감독
아.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
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카.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파.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관리
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접수·사용승인
거. 배수설비 설치 신고접수·사용승인
너. 그 밖의 상・하수도관련 이외의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장사무) ①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제4조(분장사무)① (현행과 같음)
1.~23. (생략)	1.~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계약원가심사
⑤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⑤ (현행과 같음)
1.~30.(생략)	1.~30.(현행과 같음)
31.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31. (삭제)
32. 주거환경 개선사업	32. (삭제)
33.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33. (삭제)
34.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34. (삭제)
35. 무허가 건축물 단속	35. (삭제)
36.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36. (삭제)
37. 건축물대장 관리	37. (삭제)
38. 그밖에 민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31. 그밖에 민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⑪ 도시행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⑪ (현행과 같음)
20.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업무	20. (삭제)
21.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업무	21. (삭제)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지도감독	22. (삭제)
23. 상·하수도 시설 관리	23. (삭제)
24.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	24. (삭제)
25.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25. (삭제)
26.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26. (삭제)
27.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관리	27. (삭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2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접수·사용승인
29. 배수설비 설치 신고접수·사용승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 (설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관련)

<table><tr><th>사 업 소 명</th><th>위 치</th></tr><tr><td>성주문화예술회관</td><td>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45</td></tr></table>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략)

<신설>

<신설>

<신설></td><td>28. (삭제)

29. (삭제)

20.건축업무 및 승인 업무

21.주거환경개선사업

22.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23.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24.무허가 건축물 단속

25.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26. 건축물대장 관리

제11조 (설치)② (현행과 같음)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관련)

<table><tr><th>사 업 소 명</th><th>위 치</th></tr><tr><td>성주문화예술회관</td><td>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45</td></tr><tr><td>상하수도사업소</td><td>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td></tr></table>

제13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상하수도사업소

가.상하수도행정 종합기획 및 법제관리

나. 상하수도 재산 및 자재관리</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신설>	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신설>	라. 물절약홍보 및 통계관리 업무
<신설>	마.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업무
<신설>	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업무
<신설>	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지도감독
<신설>	아. 상·하수도 시설 관리
<신설>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
<신설>	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신설>	카.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신설>	파.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관리
<신설>	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접수·사용승인
<신설>	거. 배수설비 설치 신고접수·사용승인
<신설>	너. 그 밖의 상·하수도관련 이외의 업무